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71
----------	-------

발의연월일 : 2025. 9. 25.

발 의 자 : 민형배 · 문정복 · 이개호
정준호 · 김문수 · 양부남
최혁진 · 이성윤 · 박지원
소병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에 소득세 · 법인세를 비과세해 녹색채권 투자를 촉진하려 합니다.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전환과 그린뉴딜 등 환경친화적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유치와 함께 조세 감면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사업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채권 역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녹색채권 투자

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04조의3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6(녹색분류체계상의 사업과 관련된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수립된 녹색분류체계상의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2. 환경 친화적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조달자금의 사용·관리, 사업계획의 평가와 선정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든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채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분류체계상의 사업과 관련된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
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4조의36(녹색분류체계상의 사업과 관련된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 <u>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수립된 녹색분류체계상의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u> <u>2. 환경 친화적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조달자금의 사용·관리, 사업계획의 평가와 선정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든 의무사항을 충족</u>

	<u>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 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채권</u>
--	---